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대상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확대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인력·시설·운영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생략)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u> 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병원급 의료기관</u>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 ----- ----- ----- ----- -----.
<u><후단 신설></u>	<u>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u>

④ ~ ⑦ (생략)	<u>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노인 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간병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간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간병인에 의한 환자 학대 문제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¹⁾
- 이에, 현행법 제4조의2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²⁾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입원료, 가산 수가, 입퇴원에 대한 별도 산정 수가 등 수가를 지급하고 신규 참여병원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음.³⁾

1) 이슬비, “요양병원 노인학대 원인, ‘무자격 간병인’ 지목”, 데일리메디, 2022.12.14.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2100)

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되고 있는 바,⁴⁾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모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어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즉, 요양병원은 재원일수가 길고, 일부 현장에서는 사회적 입원⁵⁾

3)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고,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참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및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현황 참조.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이 문제되고 있어 소요 재정, 필요 인력의 종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신병원은 환자 특성상 지금도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인력이 환자를 관리하는 상황 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구도가 낮다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 4월~)⁶⁾을 실시 중이고,

의료기관장에게 사적 고용 간병인을 포함한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간병인 관리·감독·지원을 통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 방안으로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적 고용 간병인 인건비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양자 병행 실시 등 적합한 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생활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사는 현상을 말함.

6) [참고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참조.

- 또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 기준을 정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기능 등’도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5가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하여 인력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⁷⁾ 종합병원 중에서도 그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신중검토)

-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에도 간병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 요양병원은 재원일수가 길고 간병필요도가 높다는 환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4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 및 운영체계를 정교화하

7) [참고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고, 한정된 인력수급상황,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병지원 등 방안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대한간호협회(찬성)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전담간호사 필수배치 및 수가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와 장기요양 등급을 고려하여 환자중증도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며,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대한요양병원협회(찬성)

□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입장임.

□ 다만, 하위법령 제정 시 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결과와 연계하고 적절한 요양병원 모델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적절한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한환자단체연합회(반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중심이고,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 적절한 모델로써, 요양병원에 적용 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감소 우려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적절한 간병서비스 모델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으므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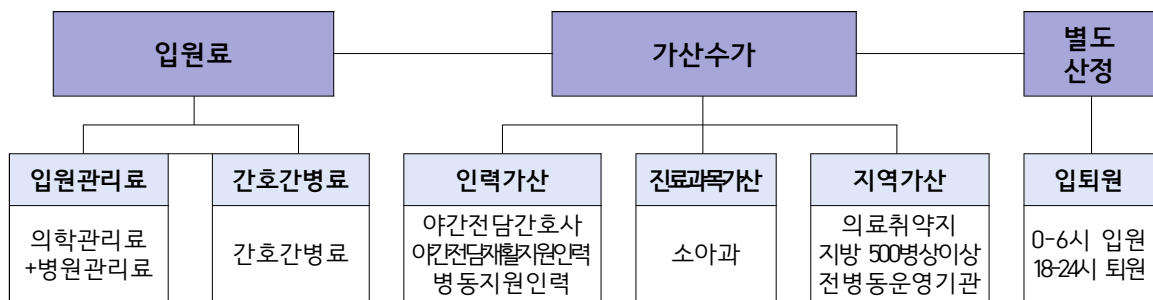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요양병원의 치료·재활 등에 부실한 환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요양병원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및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

○ 수가구성



○ 가산수가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기관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 시 가산 ※ 종별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11,920~32,720원 가산	기관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 시 가산 ※ 재활지원인력의 배치수준에 따라 4,030~10,060원 가산	병동지원인력당 환자 수에 따라 가산 ※ 구간별 2,030~12,180원 가산
소아과	의료 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입퇴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10% 가산 ※ 1세 미만 30%, 1세 이상 8세 미만 10% 가산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 해 가산 ※ 종별 간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2,960~6,760원 가산	0~6시 입원, 18~24시 퇴원한 경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각 50% 가산

○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의 환자안전 및 간호인력의 업무경감을 도모
하기 위해 '15년부터 시설개선비 지원
* (최근 예산 현황) '20~'22년 84억, '23년 87억
- 그간 국비지원을 통해 시설여건은 충분히 개선, 현장 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한 단계로 시설개선 사업은 '24년 종료

자료 : 보건복지부

[참고 2]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24~ '25) 시범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시범사업 모형 검증·보완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 조성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소요예산) '24년 85억원(사업비* 80억, 연구비 5억)
 - * 요양병원 간병지원 75.5억원, 사업운영 관리·위탁 4.5억원
- (대상기관) 요양병원 20개소(공모 선정), 병원별 최대 60병상
 - * 10개 지역 선정(경기 안산/부천, 부산, 경남 창원/김해, 전북, 광주, 대전, 충남, 대구)
 - ** 공모 및 기관선정('24.2~3월), 시범사업 운영('24.4월~'25.12월), 중간평가('24.12월)
- (대상자) ▶ 의료최고도·의료고도 + ▶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 있는 자
 - * 통합판정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간병필요가 있는 자 선발

□ 사업 내용

- (병원별 지원내용) 간병인 인건비*(약 17~25명) 및 운영비
 - * 간병인 배치 수준에 따라 국비 50~60% 지원(환자본인부담률 40~50%)
- (간병인 배치기준) 간병인 1인당 환자 수 4~8명 이하(주간 근무 기준)
- (지원기한) 180일 * 의료최고도의 경우 최대 300일

< 모형별 시범사업 현황 >

구분	A형(2개소)	B형(10개소)	C형(8개소)
기관당 병상 수	60병상		
지원 환자 수/연	1,200명 이상(60X20개소)		
배치 기준(주간근무)	주간 1:8	주간 1:6	주간 1:4~1:6
지원 간병인 총수	17명	20명	25명
환자 1인당 국비지원/월	59.4만원	69.8만원	76.6만원
환자 본인부담금/월	29.2만원 (9,750원/일)	34.4만원 (11,470원/일)	53.8만원 (17,930원/일)
환자 본인부담률	40%	40%	50%

※ 병원이 A~C형중 선택하여 환자 수 및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병인력 배치

[참고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1. 인력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 1)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 2)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2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 3)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6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나. 간호조무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40명당 간호조무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다. 간병지원인력 : 1명 이상. 다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구분	설치 기준
간호사실	○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입원실 및 복도	○ 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	○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비상연락장치	○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안전손잡이	○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욕창방지용품	○ 운영 병상의 100분의5 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비치할 것
- 다.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비치할 것
- 라.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

비 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